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 서울대 시스템을 중심으로

서울대 연구처
조진호 전문위원

연구윤리 개념

1. 일반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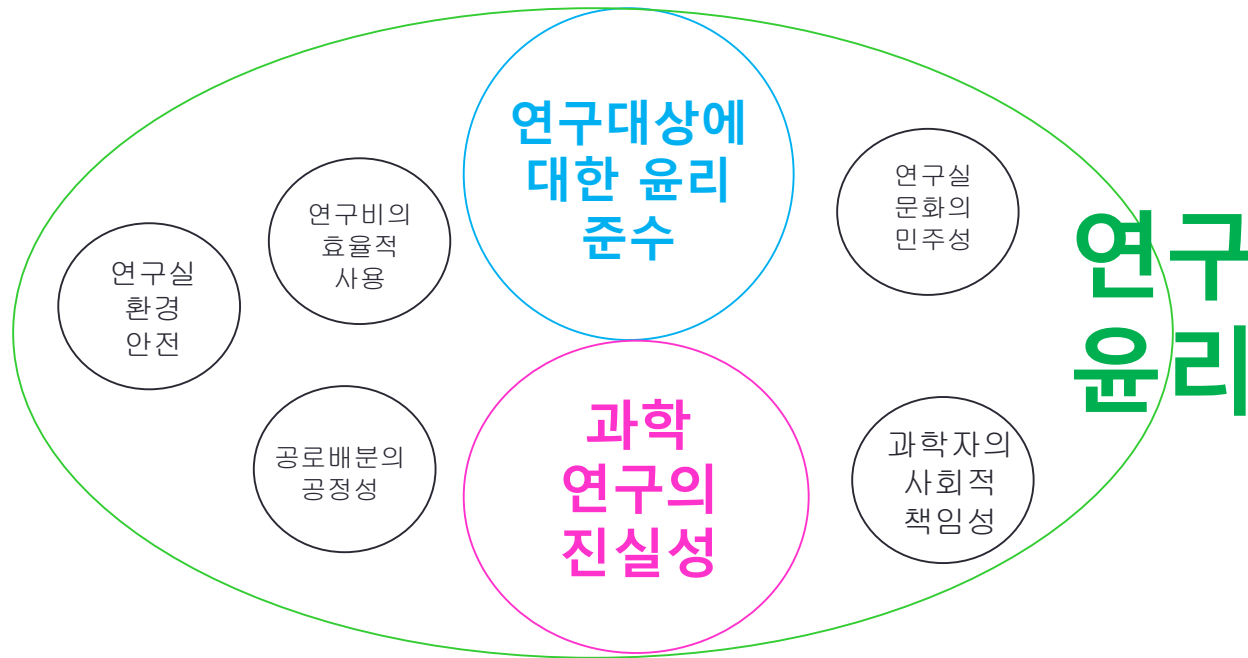
: 부정행위가 없는 정확하고 정직한 연구의 계획·수행 및 발표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 혹은 행동 양식

→ **협의의 개념**

2. 실질적 개념

: 연구자가 지켜야 할 과학적·사회적 책임과 윤리(직업 윤리)

: 책임 있는 연구 수행 (RCR)



연구윤리법 제정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윤리적 준수와 더불어 법적 준수가 필요하게 됨

1. 올바른 연구 수행

: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노트 관리 지침

2. 연구대상보호 → **법적으로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간대상연구)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대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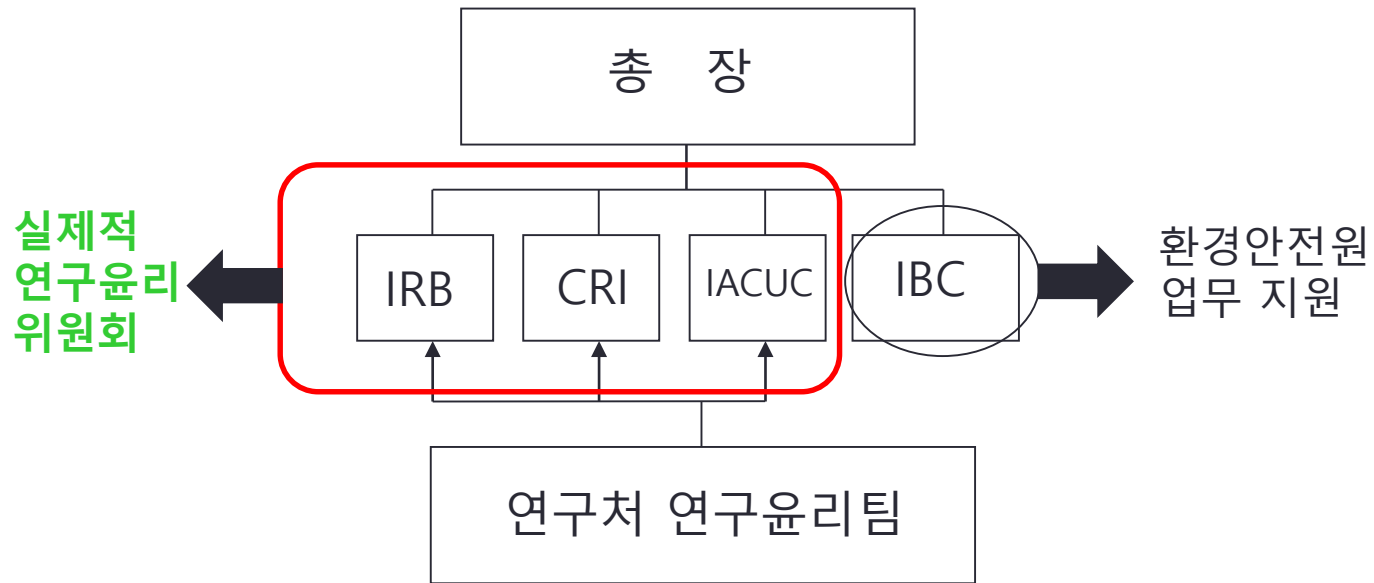
3. 생물 자원 관리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 법)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물무기법)

생명공학육성법

서울대학교 법준수 지원 시스템



- CRI :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연구진실성)
- IRB : **I**nstitutional **R**evision **B**oard (인간대상연구)
- IACUC :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대상연구)
- IBC :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Bacteria, Virus, LMO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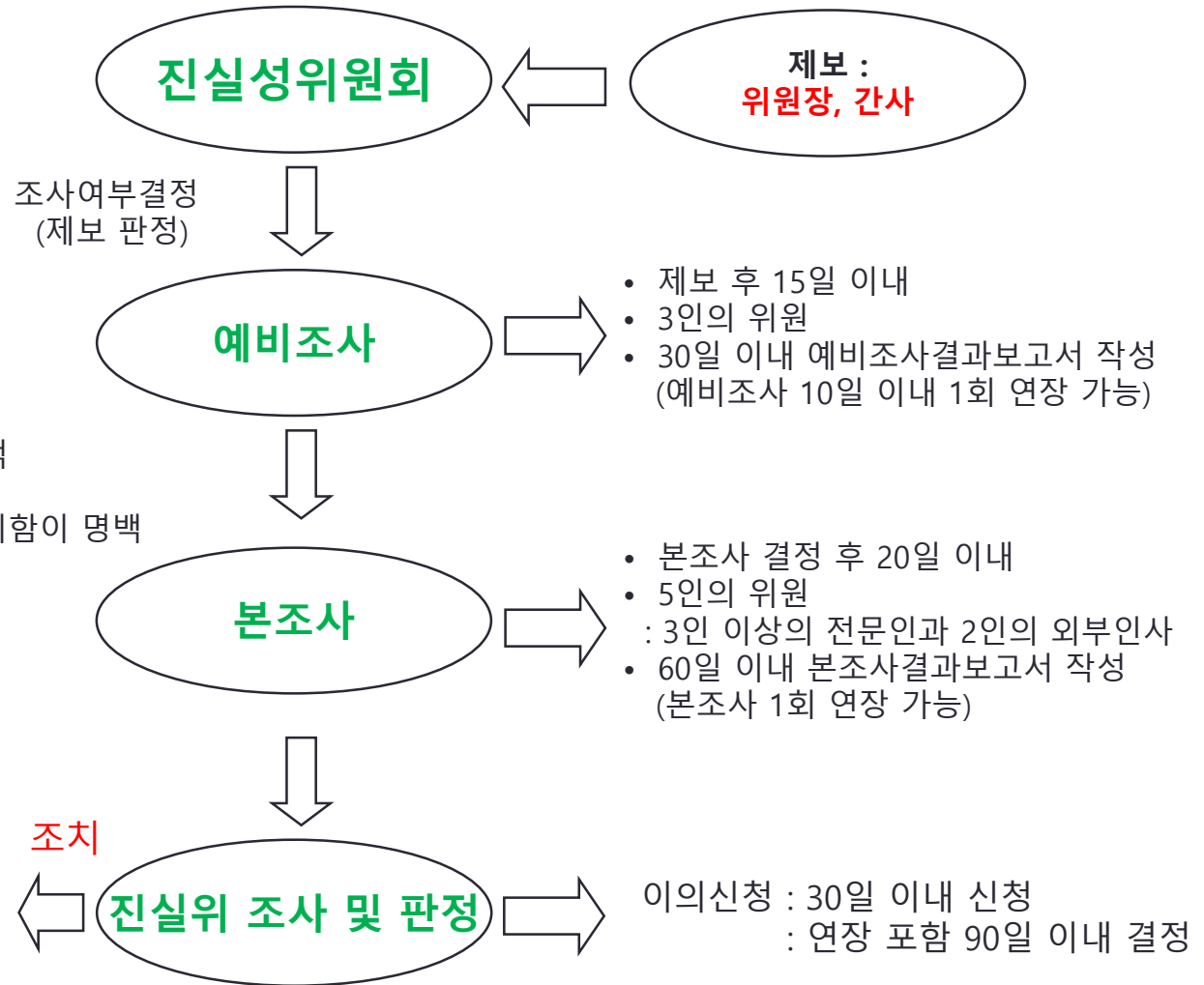
연구진실성위원회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1. 조사 대상

- 제보 당시 서울대 구성원 및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박사학위 논문 및 2006년 2학기 이후 수여된 석사학위 논문 작성자
- 그 외 본교 구성원이었을 당시 연구부정행위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정한 경우

2. 조사의 개요



** 본조사 생략

-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
- 피조사자의 사실 인정
-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

*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 인 경우 조치

- 징계, 연구비 제재, 논문 철회 또는 수정 등

- 학위취소

연구진실성위반행위

1. 허위작성·표절 등

고의(사실을 인식한 경우) 또는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위조**)
- 2) 연구데이터를 근거없이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변조**)

연구진실성위반행위

1. 허위작성·표절 등

고의(사실을 인식한 경우) 또는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3)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

연구진실성위반행위

2. 부당 연구성과사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4조제3호의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연속된 5문장 또는 한 단락 이상)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사용하거나 게재·출간하는 행위

연구진실성위반행위

3. 부당 저자표시

고의로 기여도에 관한 판단권을 일탈·남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

- 1)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저자에 포함
- 2)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배제
- 3) 기여도에 위반하여 저자 순서를 정하는 행위

연구진실성위반행위

4. 기타 위반행위

- 1)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제안 또는 허용하거나 공동으로 한 자는 해당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 2) 고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 ①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② 예비조사, 본조사 또는 위원회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는 행위
 - ③ 보관 중인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삭제 등 훼손하는 행위
 - ④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학술진흥법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2020.6.9. 제정 → 2021.1.1. 시행

2. 연구윤리 관련 조항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 변조 ·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18.7.17. 개정)

* 부정행위의 범위

- 1) 위조
- 2) 변조
- 3) 표절
- 4) "부당한 저자 표시"
- 5) "부당한 중복 게재"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제보자 위해 포함)
-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2006. 6. 16.
전면개정 2014. 12. 9.
일부개정 2020.7.30.

[절차규정]

연구윤리지침

제정 2008. 6. 24
개정 2010. 7. 16
개정 2020.9.21.

[실체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2008. 6. 24. 제정

2010. 7. 16. 개정

2020. 9. 21. 개정

주요내용

- 1)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 2)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 3) **연구자료의 관리**
- 4) **이해상충**
- 5)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 6)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 7) 연구의 안전관리 :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용 연구
- 8) 연구윤리 교육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1.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표절의 제한)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 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3. 단어의 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참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8.7.17. 개정) -1

연구부정행위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자기 표절의 제한)

-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2014. 1. 1 부터 본교에서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명 : Turn it in

- 이용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자료검색 -> 학술 DB -> Turnitin 검색 후 이용

: 서울대 이메일로 계정 만들기

※ class ID and password 확인요망

※ 한국 연구재단에서도 KCI 등재 논문을 대상으로 유사도 검색 제공
(www.kci.go.kr)

3. 중복게재·출간 제한

-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이미 게재 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를 학위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

3.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4.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5.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6.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7.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8.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 **인용 출처표시 반드시!!**

9.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8.7.17. 개정) -2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4. 저자 표시(Authorship)

-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연구 개시 시)**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 ④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8.7.17. 개정) -3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연구자료의 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기록

- ① 연구데이터는 연구의 독자성(originality)을 증명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이므로, 연구노트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연구노트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의 집합체로서, 연구자 자신 뿐 아니라 연구실 내의 지식의 전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므로, 다음 각호의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위하여 **제본된 노트**에 **내구성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특성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연구노트에 준하는 기록 인증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구데이터는 **연구일자,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원래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실험기기의 출력물 등 노트에 기재할 수 없는 연구 데이터는 노트에 붙이거나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연구노트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작성·관리할 책임
→ 점검자의 역할, 연구노트 확인 후 서명해야 함
- ② 서울대학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관리할 책임
- ③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는 서울대학교 소유임
- ④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 보관일 : 작성일로부터 5년
→ 정부과제는 정부 훈령을 따름 (30년)
- ⑤ 보안이 필요한 연구자료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 암호를 설정

참고 >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

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3.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1. 이해 상충의 정의

전문직 종사자의 **일차적 관심사**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이차적 이해**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

(Thompson, 1993. 김옥주 교수 발표문(2010) 재인용)

2. 이해 상충의 내용

-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이해 상충 관리 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개 : 연구 계획서 및 연구 결과물에 이를 밝힘**
-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구 중지
- 연구 지속 시
→ 이해 상충으로 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감독 의뢰
- 공동 연구자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 배제

부실학회 · 의심학술지

0 부실 학술행사

1. 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학술행사 참가비만 내면 동료심사 없이 학술발표를 보장하나, 실제로는 조직위원, 심사위원 및 좌장없이 허위로 운영되는 학술행사

2. 특징

- 1) 동료심사 : 동료 심사 없음
- 2) 공격적인 마케팅 : 인기 관광지 개최, 저명 인사 참석 허위 선전 등
- 3) 낮은 신뢰성 : 여러 분야를 하나의 학회에서 다룸, 참석증 남발
- 4) 운영진의 불투명한 정보 : 무료 이메일 정보 사용

3. 학술대회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해당 학술행사의 주관사 또는 협회를 알고 있습니까?
- 학술행사 개최 장소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연사로 참석한다면, 어떤 비용(행사비, 등록비 등)이 발생 또는 면제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까?
- 해당 학술행사는 스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 중 아는 기관이 있습니까?
- 학술행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까? 모든 정보(참가비, 제출일자, 행사일자, 편집위원회, 프로그램 세부정보, 개최장소 등)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 행사 일정과 의제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 이전에 해당 학술행사의 프로시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 편집위원회 목록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안내된 편집위원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학술행사의 주제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주요 연구관심사에 맞습니까?
- 편집위원회는 프리젠테이션 편집권과 동료심사 유형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0 의심 학술지

1. 정의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출판하는 학술지

2. 유형

- 1) 위조학술지 (Hijacked Journals)
- 2) 약탈적 학술지 (Predatory Journals)
- 3) 대량 발행 학술지

(출처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3. 특징

- 1) 동료심사 : 없거나 형식적
- 2) 마케팅 : 공격적 마케팅
- 3) 운영정보 : 불투명한 정보
- 4) 학술지 학문 범위 : 다양한 학문 분야
- 5) 비용처리 : 이메일을 통한

(출처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4. 학술지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1) Think

-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인가? 연구성과에 적합한가? 등

2) Check

- 아는 학술지인가? 출판사 연락 가능? 동료 평가 명시?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 가능? 편집위원을 아는가? 등

3) Submit

- 본인의 평판을 높이고, 논문 인용 수 증가 시킬 수 있다는 확신, 논문이 색인 되거나 보존되고 쉽게 검색됨, 전문적 동료 심사와 편집과정 예상 등

연구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관련 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I**NSSTITUTIONAL **R**EVIEW **B**OARD)

1. 생명윤리위원회란 무엇인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2. 심의대상

- 1)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
- 2) 인체 유래물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 3) 개인의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예)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연구

② 설문조사 ③ 인터뷰 ④ 관찰연구

⑤ 인체에서 조직이나 혈액을 채취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채취한 샘플을 이용하는 연구

⑥ 인체에서 얻어진 시료나 세포를 이용한 동물실험

※ 외부기관에서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 혹은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SNUIRB 심의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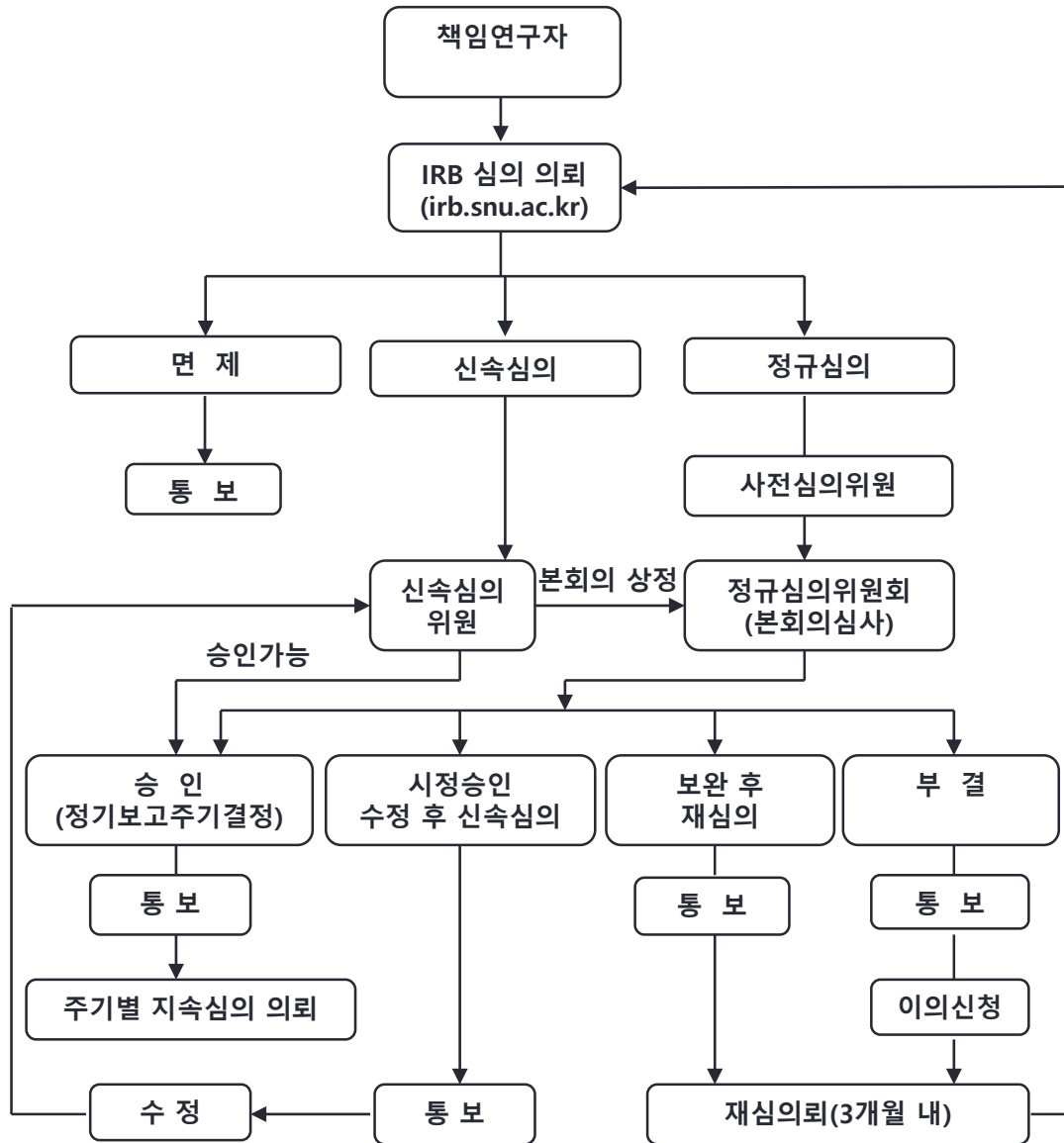
→ 개인정보 또는 인체유래물 제공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익명화하여 전달되어야 함

※ **학위 논문도 심의 대상이 됨**

3. 심의절차

1) Flow Chart



2) 심의의뢰절차

- IRB 심의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최소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전)
외부에서 자료(혹은 시료)를 받는 경우에는
자료 받기 전 (최소한 분석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함
→ 사후 심의는 실시하지 않음
- SNUIRB의 정기 회의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에 개최
- 심의 의뢰는 심의일 기준 3주전 금요일까지
온라인 (마이스누 또는 <http://irb.snu.ac.kr>) **으로 제출함**
- 심의 후 승인을 받으면 위원회에서는 모집 공고문, 피험자 제공 서류 등
관련 서류에 **승인 확인을 하여** 제공하며, 연구자들은 연구
수행 시 이러한 승인 확인이 된 서류를 사용해야 함

4. 심의 종류

1) 심의종류에는 정규심의, 신속심의 그리고 심의면제가 있으며, 심의 종류는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면제대상도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면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

2) 연구계획 승인 후 심의

- ① 승인 기간 만료 이후 예도 연구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속심의를 신청해야 함
- ② 승인가간 내에 연구참여자 대한 모든 연구가 끝난 경우 위원회에 종료보고를 해야 함. 이후 같은 IRB 승인 번호로 연구를 계속 하실 수 없으므로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새로 심의를 신청해야 함
- ③ 승인가간 중 연구계획서 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에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연구를 진행

동물실험윤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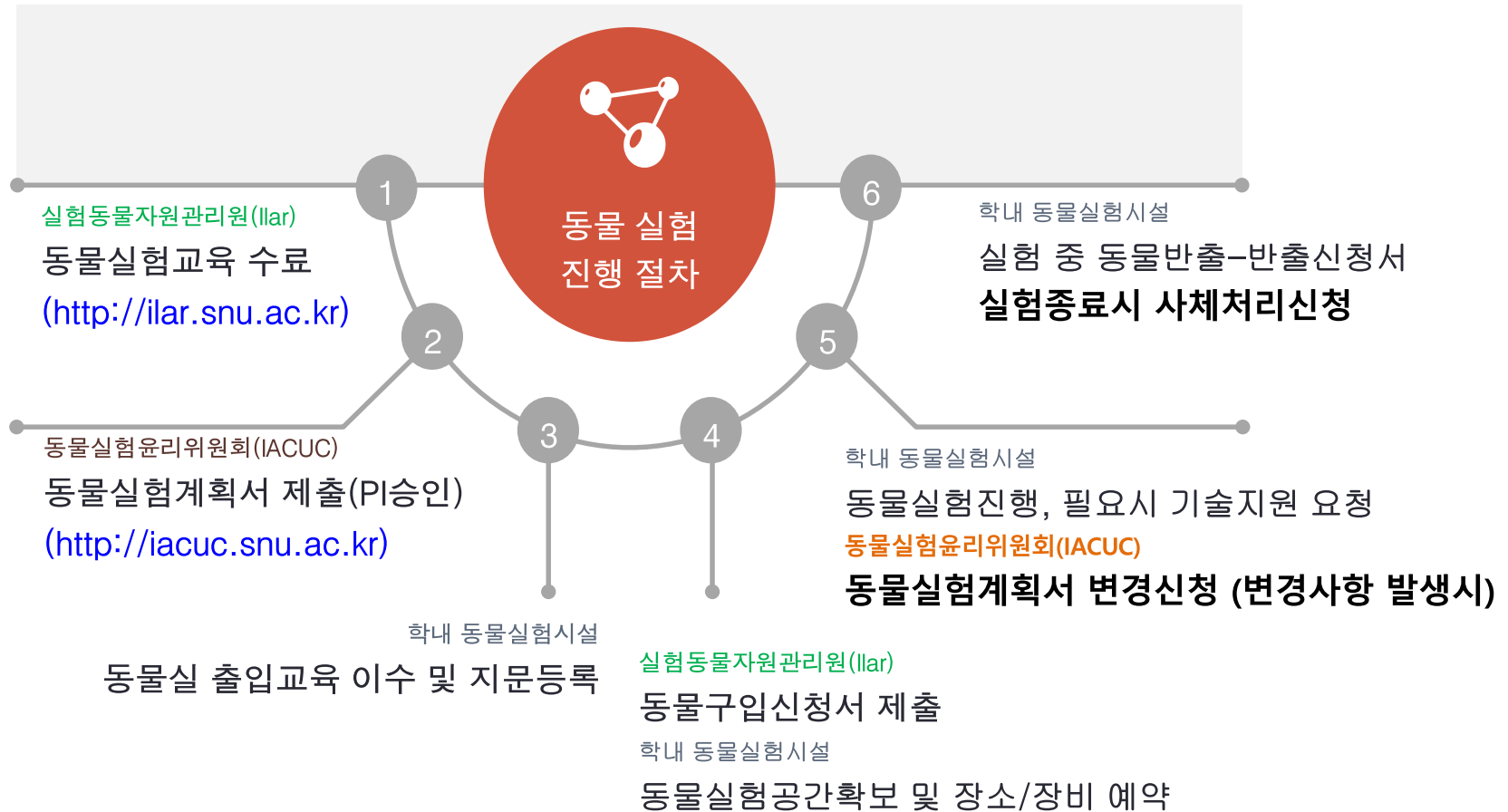
(**I**NSSTITUTIONAL **A**NIMAL **C**CARE AND **U**SE **C**OMMITTEE)

1. 설치 목적 및 기능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서울대학교 내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고자 설치 되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음

-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 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 *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거 심의를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 * 심의 전 동물실험워크숍 이수 필수!!
-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 사후처리,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 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 4)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동물실험 진행 절차



생물안전위원회

(**I**NS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1. 기능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Microorganism)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생명공학육성법」을 바탕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자원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설치함.**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음

- 1)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생물자원 연구의 위해성 및 과학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생물 안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생물안전등급-3 실험 시설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서울대학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위원회의 업무

- 1) 생물자원 이용 연구의 심의
- 2) LMO 시설 신고 및 설치
- 3) 시험 연구용 LMO 수입 신고
- 4) 생물작용제 보유 및 제조 신고

감사합니다!!!

서울대 연구윤리팀

880-5152, 5153